

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3.3.입니다

- '25년 하반기 상장법인 대주주 등 신고대상자에게 2.4.(수)부터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-
- 개선된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비과세 자가진단 기능을 제공합니다 -

□ **주요사항** 2025년 하반기(7월~12월)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3.3.(화)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(신고대상)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, ②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,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(중소·중견기업 주식을 K-OTC¹⁾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²⁾는 제외)가 신고대상입니다.

- 1)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(Korea Over-The-Counter)
- 2) 지분율이 4% 미만인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을 보유한 주주

⇒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대다수의 투자자는 소액주주로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.

* 2025년에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('26.5.1.~6.1.)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.

○ (상장주식 대주주)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,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합니다.

|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 |

구 분	코스피	코스닥	코넥스
지 분 율	1% 이상	2% 이상	4% 이상
또는 시가총액	50억원 이상(공통)		

*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1인과 그의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 합계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을 판단합니다. 참고 1

- (사전안내) 국세청(청장 임광현)은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증권사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에게 신고 대상 여부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|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 및 사전안내 실시 범위 |

구 분	상장주식		비상장주식	
	장내거래 ¹⁾	장외거래	K-OTC 시장	K-OTC 시장 외
대 주 주	○(❶) [사전안내]	○(❶) [사전안내]	○(❸) [사전안내]	○(❸) [조건부 사전안내 ²⁾]
소액주주	- * 신고대상 아님	○(❷) [사전안내]	(중소·중견기업 제외)	

- 1) 증권거래소의 공개된 매매시스템을 통해 체결되는 거래(코스피·코스닥·코넥스 시장)
 2)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이체(양도)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안내문 발송

- (안내일정) 국세청은 2월 4일(수)부터 모바일 알림(카카오톡 등)을 통해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며,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알림을 받지 못한 대상자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(2.10.)합니다.

|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|

1차 발송(2.4.)	2차 발송(2.5.)	3차 발송(2.6.)	4차 발송(2.10.)
	(1차 실패 시)		
카카오톡	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Pay	(2차 실패 시) 통신3사 문자	(3차 실패 시) 우편 안내문

- **신고도움**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올해에는 홈택스 신고화면에 동일자·동일 종목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을 추가하고 비과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「비과세 자가진단」 서비스를 신설하였습니다.

- (미리채움 서비스) 주식거래내역 입력화면에서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*을 전면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화면을 구성하여 편의성을 높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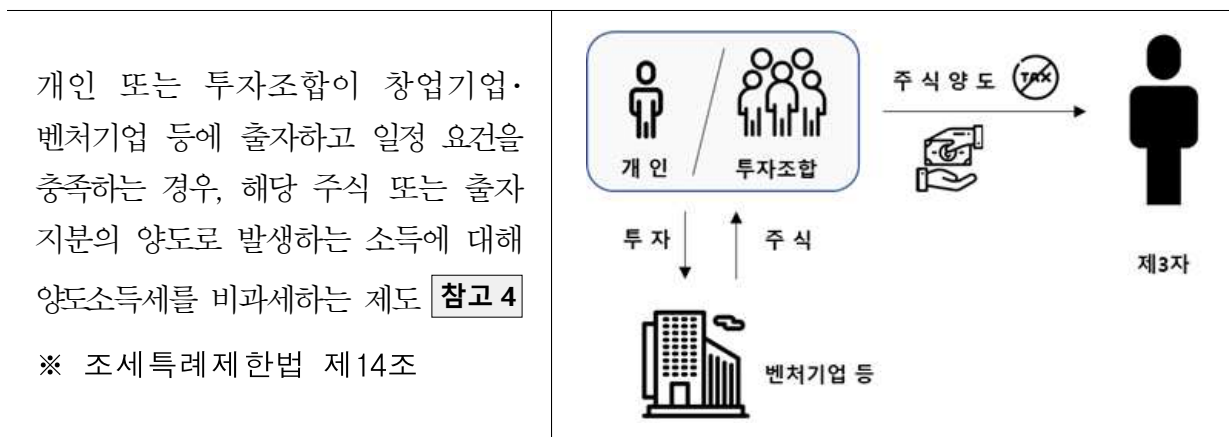
* 주식정보(사업자등록번호, 주식종목코드, 주식종목명), 양도내역(양도일자, 양도유형, 양도주식수, 주당 양도가액, 양도가액), 양도소득금액(취득가액 입력 시) **참고 2-1**

- (양도내역 일괄처리) 동일 종목 양도내역을 한 건씩만 선택할 수 있었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·양도가액 자동 합산 기능을 홈택스 신고화면에 도입했습니다. 참고 2-2

- (비과세 자가진단) 주식 양도소득이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 특례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납세자가 신고 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「비과세 자가진단」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참고 3

*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최종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
|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|



- **당부말씀**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납세자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국세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납세자의 성실신고 지원 및 정교한 사후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	책임자	과 장	남아주 (044-204-3471)
		담당자	사무관	이창훈 (044-204-348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준목 (044-204-2501)
		담당자	사무관	채상철 (044-204-2532)
		담당자	사무관	김명원 (044-204-2542)

□ 최대주주 그룹이란?

○ 주주1인등(주주1인 및 그의 특수관계자)의 지분을 합계가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를 의미합니다.

* 지분을 합계가 50% 이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주1인등 중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경우이면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합니다.

주주1인의 특수관계자(법인령§43⑧1)

가) 친족(국기령§1의2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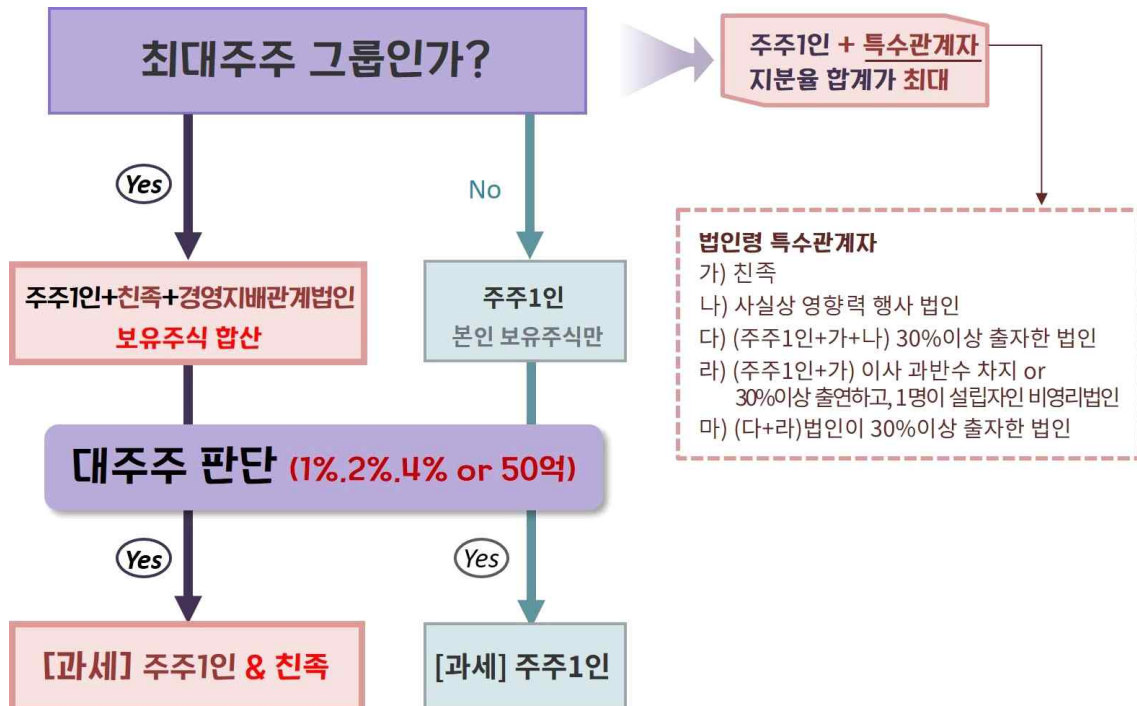
나)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

다) 주주1인+친족(가)+사실상 영향력 행사 법인(나)이 30%이상 출자한 법인

라) 주주1인+친족(가)이 이사 과반수 차지 or 30%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

마) (다+라)법인이 30%이상 출자한 법인

□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흐름



참고 2-1

개선된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서비스 화면

미리채움 항목을 전면에 배치하고 세액계산 흐름에 따라 취득·필요경비 → 양도소득금액 → 세율 선택 순으로 신고화면을 재구성하여 편의성 제고

주식양도소득금액명세서 입력/수정 도움말

미리채움 초기화 X

주식정보 주식검색

사업자번호 1 확인

주식종목코드 1

주식종목명/상호명 테

양도 ? (단위:원)

양도일자 2025-07-01

유형 [01] 매매

양도주식수 5,000

주당 양도가액

양도가액 123,691,230

취득 ? (단위:원)

취득일자 2025-01-30

유형 [01] 매매

주당 취득가액 10,000

취득가액 50,000,000

필요경비 ? (단위:원)

필요경비 5,000,000

양도소득금액 ?

전체 양도소득금액 68,691,230 원

비과세 양도소득금액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

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68,691,230 원

양도물건종류 ? [22]상장주식(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이상 보유주식)

세율구분 ? [63]중소기업외 대주주, 중소기업 대주주

주식종류 ? [45]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- 중소기업외 법인(대주주)

세율 선택 도움말

참고 2-2

양도내역 복수 선택 및 양도주식수·양도가액 자동 합산

양도 일자와 종목이 동일한 경우, 신설된 양도내역 복수 선택 기능을 통해 선택된 양도주식수·양도가액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

신고대상 주식 불러오기

종목명 -전체- 양도일자 2025-07-01 - 2025-12-31 조회

신고대상 주식 목록 10 X

선택	번호	사업자등록번호	주권발행법인	양도일자	양도주식수	양도가액	종목코드	종목명	상세
☒	1	11		2025-07-06	5	5,000			상세
☒	2	1		2025-07-01	5,000	123,691,2-			상세

주식거래내역 상세보기 X

(단위: 원)

번호	사업자등록번호	주권발행법인	양도일자	양도주식수	양도가액	종목코드	종목명
1	1	(주)	2025-07-06	2	2,000		(주)
2	1	(주)	2025-07-06	2	2,000		(주)
3	1	(주)	2025-07-06	1	1,000		(주)

< 이전 1 다음 > 총 3건

양도일자·종목이 동일한 경우
양도주식수, 양도가액 자동합산

참고 3

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

계산서·영수증·카드 > 증명·등록·신청 > **세금신고** > 납부·고지·환급 > 지급명세·자료·공익법인 > 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 > 상담·물품·제보 > 세무대리·납세관리 >

신고서 조회/삭제/부속서류
 부가가치세 신고
 종합소득세 신고
양도소득세 신고
 원천세 신고
 증여세 신고
 상속세 신고
 개별소비세 신고
 인자세 신고

양도소득세 신고
 양도소득세 신고하기
 신고도움 서비스
 신고도움 자료 조회

모의계산
 - 양도소득세 자동계산
- 양도소득세 비과세·중과세 자가진단
 -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 대상자 확인

홈 > 세금신고 > 모의계산 > 양도소득세 비과세·중과세 자가진단

양도소득세 비과세·중과세 자가진단

양도소득세 종합안내

· 양도소득세 비과세·중과세 자가진단은 납세자가 스스로 1세대1주택 비과세, 감면,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입니다.
 · 진단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,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주식 비과세 자가진단(비로그인)
 ※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를 간단한 입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창업기업 등의
출자에 대한 과세특례

·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은 납세자가 스스로 비과세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한 서비스입니다.
 · 진단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라며,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불복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 · 주식 양도소득세 상담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(국번없이 ☎126)
 · 법령 확인 필요 시 「국세법령정보센터」 [바로가기](#) (클릭)
 · 해당 주식 종류 선택 시 참고하세요.
 > 투자기업 검색
 ④ [중소벤처기업 벤처확인시스템](#) (클릭) → [공시·통계] → [벤처확인기업 공시]
 ⑥ [벤처투자종합포털](#) (클릭) → [벤처투자매칭]

※ 정확한 확인을 위해 **투자한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관리자 등을 통해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**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해당하는 주식 종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☐ ① 벤처투자회사 또는 「어산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1호
☐ ② 벤처투자조합·민간재난집행투자조합·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2호~2호의3
☐ ③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3호
☐ ④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(개인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 포함)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4호
☐ ⑤ 창업기획자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5호
☐ ⑥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등
 · 조특법§14조 1항 6호
☒ ⑦ K-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
 · 조특법§14조 1항 7호
☐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법*으로 모집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
 ·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17조의10 【증권 모집의 특례】에 따른 방법
 ** 조특법§14조 1항 8호

7

소액주주*로서 양도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입니까? (관련 법령 : 조특법§14조 1항)
 * 지분율 4% 미만 &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주주(소특령 §167의8①)
☒ 예 ☐ 아니요

※ 귀하가 입력한 내용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 **양도하신 주식들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**

이전

결과확인

Q 1 모든 창업기업 등への 투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가요?**A** 아닙니다.

창업기업·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조에서 정한 ① 출자 대상 기업, ② 출자 방식, ③ 취득 시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.

Q 2 비과세에 해당하는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?**A** 신고하여야 합니다.

해당 비과세는 요건 충족 여부를 전제로 적용되는 특례이므로,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주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 확인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
Q 3 주식을 취득한 후 바로 판매해도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나요?**A.** 투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
일부 유형의 경우(조특법§14①4,8 등)는 출자일부터 일정 기간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, 취득 후 즉시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 유형별 보유기간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
Q 4 한 번 비과세를 받으면 이후 투자도 계속 비과세가 되나요?

A 건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.

조특법 제14조는 투자 건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. 이전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, 새로운 투자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Q 5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한 경우 비과세 되나요?

A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해당 과세특례는 기업에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'신주발행' 방식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. 따라서 기존주주로부터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(단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「증권거래세법」 제3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)

Q 6 홈택스 자가진단 결과만 믿고 신고해도 되나요?

A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되,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홈택스의 '주식 비과세 자가진단'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일 뿐, 그 결과가 법적 효력을 갖거나 불복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.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국세상담센터(126)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